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미승씨엔에스검사(주)(김승) ② (주)해명엔지니어링(이영근)

나. 전화번호 : ① 051-291-2055 ② 051-291-6369

2. 명칭 : 태양광 충전형 무선 데이터로거를 이용한 교량 재하시험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로거의 개발로서 교량의 재하시험에 필요한 각종 센서를 무선 데이터로거 클라이언트에 연결하고 무선으로 호스트 장비로 전송한다. 휴대 가능한 소형의 호스트 장비만 사용할 경우 20분간 데이터를 취득 가능하고, PC와 연결할 경우 최대 30년동안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모듈은 자체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있어 장기 취득시에도 전원라인을 연결 할 필요가 없다. 본 기술은 기존 교량의 동·정재하 시험의 센서케이블, 전원케이블 설치과정을 생략하여 케이블 노이즈가 없고 센서설치와 센서해체 공정을 단축한다

<범위>

교량의 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센서들을 부착하고, 태양광 충전기능과 무선 전송기능이 포함된 소형의 데이터로거를 교량 재하시험에 적용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킨 교량 재하시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6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행산업 등의 창업제외업종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금융회사등 투자제한 단서 규정을 정비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에서 발표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안 제3조의6제5항제3호)

1) (현황)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결성액의 1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자 전원을 벤처펀드 출자자로 산정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제약이 큼

2) (개정내용)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시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의 10% 이상을 출자해도 출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규정

3) (기대효과) 벤처펀드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제한 금융회사 중 예외 단서 개정(안 제3조의9제1항)

1) (현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될 예정(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155호)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금융회사 투자제한 규정 제3조의9제1항제1호 단서 규정 정비

3) (기대효과) 소액해외송금업 등 금융회사등에 대한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 허용으로 신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